

# 道政質問(補充) 答辯書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
| 질문제목 | 소방전문 병원 설치 및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|     |     |
| 질문의원 | 관광건설위원회 강우신 의원          |     |     |
| 소관부서 | 소방본부                    | 답변자 | 도지사 |

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대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쳐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, 지난 11월 8일 도정질문시 보충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한 서면 답변입니다.

**첫째 : 기존 의료원 시설 보강방안의 도정 시책 반영시기에 대한 답변입니다.**

- 소방전문화상치료센터 설립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도내 청주 의료원을 방문 실무협의 결과, 15개 진료과에 22명의 진료진이 배치되어, 외상, 골절 등 일반 환자 위주로만 치료하고 있으며,

- 2차 의료기관인 의료원 인력, 시설, 장비로는 경미한 화상부분만 일반외과에서 기본적인 진료 및 치료만 가능하고, 2도이상 전신화상의 경우에는 특히, 얼굴, 손, 발 등 화상은 합병증 관계로 서울의 화상전문 병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(환자 및 보호자가 선호)

※ 국내 화상전문 치료기관 ( 2개소)

- 한림대학교 의료원 한강성심병원 화상전문치료센터  
( 1일 평균 재원환자 220~230명 )
- 한전 의료재단 한일병원 전기화상 전문진료센터

- 도내 의료원내 화상전문 치료요건을 갖추려면 초기 수액치료, 피부조직 배양, 이식수술 및 수술후 성형, 정신, 재활, 물리치료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하므로 별도 화상전문 외과, 성형외과, 재활의학과, 신장내과, 감염내과를 신설 및 전문의를 두고, 진료에 따른 화상전담 간호사, 치료사, 사회복지사, 물리치료사, 임상심리사 등 지원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,
- 전문진료 및 치료시설 장비로는 멸균기능이 필요한 화상중환자실(격리병상), 화상치료실(전용수술실),

일반병실, 화상클리닉 시설을 별도 설치 운영 하여야 하며, 소요장비로는 혈액투석기, 인공 호흡기, 수술실 침대, 살균수처리기, 고압산소 치료기 등을 추가 확보하여야 합니다.

- 이토록 화상전문치료센터 설립은 3차 의료기관인 대학병원급에서도 막대한 예산소요, 건립후 수요공급의 불일치로 인한 경영채산성, 화상 환자나 보호자의 선호도, 전문인력 확보 및 인건비 문제, 고난이도 환자관리에 비해 낮은 보험수가 등으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
- 따라서 2차 의료기관인 도내 청주, 충주 의료원의 기존자산에 막대한 인력 및 시설장비를 투자하게 되면 유희자산의 상태로 경영에 악영향이 예상되고(의료원측 견해), 도내 공상으로 인한 소방공무원 화상환자 발생현황도 2000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2명정도의 소수임을 감안 할 때(일반공상 50명 정도) 의료원내에 소방전문 화상치료센터 설립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,

-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경찰병원 또는 국·공립 병원내 「소방전문치료센터」 설치 등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(10월 소방방재청 국정 감사시), 향후 중앙에서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의료 시설 설립시 이를 활용토록하여 공상 소방공무원들의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.

※ 경찰병원, 국립의료원, 국립병원 경영악화로 운영 곤란

- 경찰병원 부산분원 신축공사중 중단

- 1984년 철도병원 경영적자, 실효성 등으로 민간매각  
(중앙대 용산병원으로 전환)

**둘째 :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관련 연금법 개정 등 관련기관에 건의하여 반영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.**

-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,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하거나, 퇴직후 3년이내에 공무상 질병,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때는 그 유족에게 보수월액의 36배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.

-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현행 보수월액 36배의 유족보상금을 72배로 상향조정 지급할 수 있도록 연금법을 개정하려고 현재 입법추진 검토 단계로 알고 있으며,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.
- 이는 경찰공무원 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사안으로 연금법을 개정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, 소방방재청 및 연금관리공단에 적극 건의하여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방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**감사합니다.**